

#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개념

2001. 11. 21

## 1. 관계 법령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체계

정보통신공사업법(제78조, 부칙4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60조, 부칙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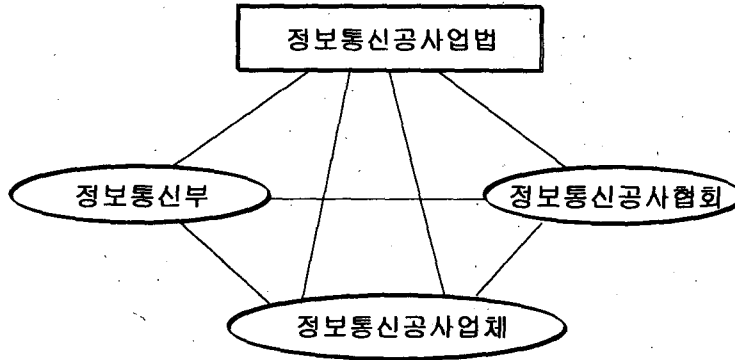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제27조, 부칙2항)

고 시 (4)

- 경미한공사의 범위
- 설계대상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
-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와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나. 정보통신공사사업법의 개념

(1) 구성요소



(2) 공사업법의 목적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

- 자격있는 시공업체
- 정보통신기술자의 보유
-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유한 영역
- 설계, 시공, 감리의 절차
- 하자의 담보책임 및 벌칙 규정

고객(발주자, 건축주, 이용자)의 만족

- 완벽한 시공
- 경쟁력있는 시공
- 미래지향적인 시공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 기술인력의 육성과 전문교육체계
- 기술의 향상, 시공방법의 개량
- 공사업체간 보증 및 자금융자 실시

정보통신기술자와 공사업체의 발전도모

- 정보통신기술자의 관리
- 정보통신공사사업체의 발전

## 2. 정보통신공사관련 용어정의

### 가. 정보통신설비

-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나.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 (2) 방송법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보수공사

## 공사의 종류

### (1) 통신설비공사

- 통신선로설비공사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설비 등의 공사
- 교환설비공사 : 국선 및 사설교환설비등의 공사
- 전송설비공사 : 전송단국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등의 공사
- 구내통신설비공사 : 구내통신선로, 기동전화설비등의 공사
- 이동통신설비공사 : 개인이동통신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등의 공사
- 위성통신설비공사 : 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측위시스템설비등의 공사
-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무선CATV(MMDS-LMDS)설비등의 공사

### (2) 방송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 영상·음향,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등의 공사
- 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 방송관로, 방송케이블 설비등의 공사

### (3)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 IBS설비, CCTV설비, 재해방지설비등의 공사
- 정보망설비공사 : LAN, VAN, TMN, CTI, ISDN, xDSL설비등의 공사
- 정보매체설비공사 : 화상회의시스템설비, 홈네트워크시스템설비등의 공사
- 항공·항안통신설비공사 : 계기착륙설비, 위성항법시스템설비등의 공사
-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 : 역무자동화설비, 전자식신호제어설비등의 공사

### (4) 기타설비공사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UPS설비, 낙뢰방지설비등의 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

-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로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라. 용역**

-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등의 역무를 수행하는것을 말한다.

**마. 설계**

-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서,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바. 감리**

-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의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 정보통신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와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등 급	기술자격자	인 정 기 술 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기사자격취득후 8년이상 산업기사자격취득후 11년이상	박사학위취득후 3년 석사학위취득후 8년 학사학위취득후 12년 전문대졸입후 15년	
고급기술자	기사자격취득후 5년이상 산업기사자격취득후 8년이상 기능사자격취득후 13년이상	박사학위취득자 석사학위8년, 학사학위8년 전문대12년, 고등학교15년 직업훈련1년이수후 15년 직업훈련2년이수후 12년	박사학위취득후12년 전문대졸입후15년 고등학교졸입후18년 공사입무23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자격취득후 2년이상 산업기사자격취득후 5년이상 기능사자격취득후 10년이상	석사3년, 학사8년, 전문대9년 고등학교12년, 직준1년 12년 직업훈련2년이수후 9년	박사학위취득후9년 전문대12년, 고교15년 공사입무20년이상
초급기술자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취득자 기능사자격취득후 4년이상	석사·학사학위 취득자 전문대2년, 고등학교4년 직준1년:4년, 직준2년:2년	박사학위취득후3년 전문대5년, 고교7년 공사입무10년
기능계 기술자	기능사 자격 취득자 기능사보 자격 취득자	고등학교졸입후 1년이상 직업훈련1년이수:1년이상	고등학교졸입후2년 공사입무5년이상

### 3. 정보통신공사업

#### 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입체 : 1억5천만원
  - 개인입체 : 2억원
- 기술능력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명 이상
  - 최소한 요건 : 기능계 1명, 초급2명, 중급1명
- 사무실
  - 15제곱미터 이상

#### 나. 등록방법

- 각 지역을 관할하는 체신청 통신업무과

#### 다. 공사실적(2000년 관련 공사업실적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정보통신공사업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총 액	52,024	473,420	300,790	56,480	93,560
업체당 평균실적액	15.4	82.7	15.7	18.0	11.4

#### 라. 공사업관련단체

- 명 칭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주요사업
  - 회원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권익옹호
  - 정보통신공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정보통신공사 기술지도 및 시공실태조사
  -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및 교육
  - 재해예방안전기술지도
  - 표준품질 및 노임단가 현실화
  - 공사수급 및 하도급 분쟁조정등
- 공사업체수

서울	부산	경기	경북	충남	전남	전북	강원	충북	제주	총계
1,539	617	744	477	255	378	154	160	69	64	4,457

감 사 합 니 다.

관련자료 홈페이지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http://www.kica.or.kr>

